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23 선고 2022가단87934 판결 [구상금(법인격부인)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진성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영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원고에 대하여 262,680,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생인 C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원고는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 중 일부인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가 2019. 12. 31. 자신이 운영하던 ‘D’을 폐업하였는데, 피고회사는 2019.

5. 2. 위 D과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목적이 유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동일한 연락처를 사용하고 있는 점, ② 피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인 C는 B의 동생이고, 전 사내이사인 E은 B의 자녀인 점, ③ D과 피고회사의 매출 · 매입처가 일부 동일한 점, ④ D에서 근무하던 F, G가 D 폐업 이후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점, ⑤ B가 D을 폐업하기 직전인 2019. 7. 26.경부터 2019. 12. 26.까지 사이에 D 명의의 사업자계좌에서 피고회사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자금이 이체되었고, 위 자금으로 피고회사의 직원 임금, 임차보증금, 물품대금으로 사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D 명의의 사업자계좌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위 C에게 수차례 자금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채무면탈을 위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그런데,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⑥ 피고회사의 대표자 C가 피고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C가 B의 동생이고 상호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C가 B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관계라거나 B가 피고회사의 설립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⑦ 피고회사가 D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D의 물적 설비를 그대로 인수하였다거나, B가 D 폐업 이후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회사의 수익을 지급받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⑧ 피고회사의 영위사업 중 D과 동일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실외기 바람막이 등을 판매함으로써 D과 동일한 사업만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피고회사의 매입 · 매출처 중 D의 매입 · 매출처와 동일한 업체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H, I, J, K 등 D의 매출처과는 다른 피고회사의 매출처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가거나 D과 피고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 ① 내지 ⑤ 기재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피고회사와의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피고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피고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